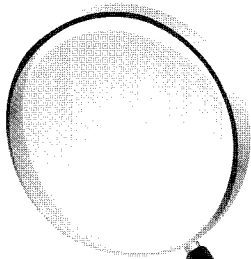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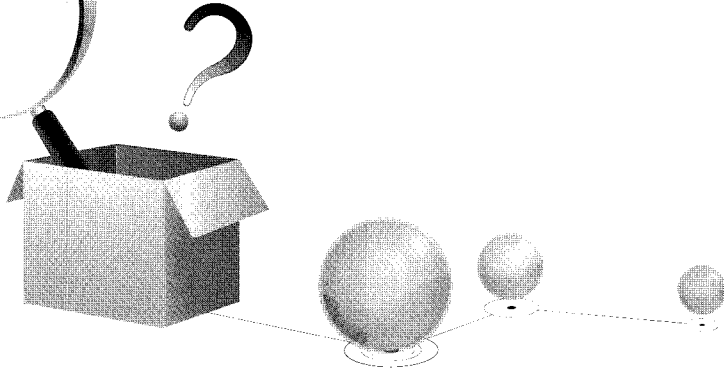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유일호 의원·이용섭 의원

이 내용은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와 유일호 의원·이용섭 의원이 작성한 보도자료임.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 도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포괄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1.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세제 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 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2. 반면에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등 3대 이슈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서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정리했다고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밝혔다. 9일 종합토론회는 4차례 논의결과 도출된 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 및 3대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될 것이며 5차종합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토론회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지경부 이호준 에너지지원정책과장,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 ▲한림대 김승래교수(전 조세연구원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박사, ▲건국대 강희정교수 (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수석연구원),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교수, ▲안병욱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장, ▲한발대 조영탁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3. 국회 유일호(한), 이용섭(민)의원실과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국책기관, 전문가 등이 각계가 참여하는 연속기획토론회를 5차례 진행해왔다.

*자료 1.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2011 컨센서스 (안)

-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

2011. 6. 9

국회 유일호 의원(한), 이용섭 의원(민)

경실련(사) 갈등해소센터

1. 연속기획 토론회 취지 및 경과

1. 연속 기획토론회 취지 및 배경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 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감축)설정 및 자발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함.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 및 탄소세(환경세) 도입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에너지 세제가 갖는 비효율성, 친환경성 미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마련 방안을 두고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이견 및 대립이 표출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두고 갈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
- 유류세, 전기요금 및 탄소세(환경세) 도입 등 에너지사용에 따른 재정 (세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합의가 필수적임.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유일호, 이용섭 여야 의원과

정실련 (사)갈등해소센터는 공동으로 각계가 참여하여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하는 5차례 연속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II. 에너지 세제개편의 7대 원칙

1.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상 개혁이 필요함.
- 환경세의 도입과 재정지출구조의 전환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반세 전환시점인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함.

2.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 고유가 기조를 고려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을 통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관행적인 지출구조를 혁신하여 전체 재정에서 도로건설 등과 같은 온실가스 유발형 사업이 아니라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에너지 및 환경부문에 대한 지출확대가 필요함.
- 고유가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따른 에너지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보조방식의 에너지복지제도의 체계화와 관련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함.

4.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 에너지 세제의 경우 복잡한 과세구조 및 부과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목적세의 폐지가 필요함.

-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형평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급 안정성을 위한 국가에너지믹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5.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 최근 기술진전과 자동차 보급추이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대기오염 비용, 혼잡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 휘발유, 경유, LPG(부탄) 외에 CNG 과세 등을 통해 수송용 에너지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의 관점에서 친환경차 보급지원을 위한 자동차 세제 개편이 필요함.
- 6.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 국가에너지효율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높은 유가와 낮은 전기요금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고탄소 전기난방의 확산방지가 중요함.
 - 최근 전기요금의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와 병행하여 난방용 연료에 대한 낮은 세율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점진적 과세를 통해 난방용 유류와 전기요금간의 괴리 축소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7. 환경세 도입과 관련하여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 유가보조금 등이 불가피한 경제적 및 사회적 근거하에 지급되고 있으나 에너지절감이나 환경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세금은 현실화하면서 그 부담을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I. 에너지 세제개편의 3대 과제

1.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 1) 신규도입안 : 세수의 증대효과 및 정책효과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경제 전반에 변화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탄소세의 신규 도입이 필요함. 하지만 새로운 세제

의 도입에 따른 세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하여 탄소비용중 일부만 반영하고 이후에 세율을 증가시킴.

2) 내부조정안 : 고유가 하에서 세수의 추가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세수 범위내에서 에너지소비의 사회적 비용(대기오염, 혼잡비용, 탄소비용)의 반영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세율을 증가시킴(결과적으로 기존 세수의 개별소비세와 탄소세로의 분할방안).

※ 소수의견(도입유보안) : 에너지세수의 지출구조 개선에는 동의하나 세입의 측면에서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신규도입방안이나 향후 추가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부조정안 등의 탄소세 도입 유보.

2.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1) 현행유지안 :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및 에너지 저소비형 고효율의 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아니며,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음.

2) 인하고려안 : 기존 세제의 내부조정을 통해 고탄소 에너지원(유연탄 등)에 과세하고 그 세수만큼 기존 유류세의 하향조정이 가능. 이는 높은 유류가격과 전기요금간의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유용함.

3.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1) 현행유지안 : 화물업계(유가보조금)와 농어업(면세유)의 산업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보조금 개선안 : 동일한 유류제품에 대한 조세차별로 에너지절감문제는 물론 면세유의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해당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는 현실화하고 보조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